

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5. 6. 27.] [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283호, 2025. 6. 27., 일부개정.]

국립강릉원주대학교, 033-640-2959

제8장 학위논문의 심사 <개정 2024. 12. 30.>

제30조(논문계획서)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3차 학기, 석·박사 통합과정의 7차학기,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 까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업연한을 1년 이내 단축하는 석·박사 통합과정은 5차 학기부터 논문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.

<개정 2022. 12. 26.>

② 제출 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계획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,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

제31조(학위논문제출시기) 학위 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.

제32조(학위논문제출자격)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석사과정의 보충과목 이수자는 인정학점외의 부족학점을 위 학점에 가산 취득하여야 하며 정원의 외국인 학생은 어학능력 검증을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②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, SCIE, SSCI, A&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학과(전공)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표절검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제33조(학위논문 심사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)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26.>

1. 석사과정

- 가.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
- 나. 학위논문 추천서 1부
- 다. 논문요약서 1부
- 라. 학위청구논문 3부
- 마. 기타 필요한 서류

2. 박사과정, 석·박사 통합과정

- 가.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
- 나. 학위논문 추천서 1부
- 다. 논문 요약서 1부.
- 라. 연구실적서 1부 및 연구실적 논문별쇄본 1부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1부
- 마. 이력서 1부
- 바. 학위청구논문 5부
- 사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34조(논문편수)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. 다만,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분, 모형, 표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35조(논문작성 언어)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②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,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논문체제 및 작성)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7조(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)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5. 6. 27.>

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5. 6. 27.>

제38조(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)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<개정 2025. 6. 27.>

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을 외부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.<개정 2025. 6. 27.>

제39조(학위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)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되,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.

제40조(논문심사위원의 교체 금지) 위촉된 심사위원은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.

제41조(학위논문의 심사) ① 석사학위논문심사는 1회 이상으로, 박사학위논문심사는 2회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2. 30.>

② 석·박사 통합과정의 경우는 박사학위논문심사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2. 12. 26.>

③ 학위논문심사용 논문은 지정된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하며, 공개발표회는 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6.>

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지정된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한다. 다만, 공개발표회는 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41조의2(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)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특성을 반영하여 학위청구논문을 다른 실적 또는 5학기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7. 1.><개정 2023. 12. 4.>

②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 7. 1.>

제42조(학위논문심사기간)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당해 학기 최종심사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43조(구술시험) 삭제 <개정 2024. 12. 30.>

제44조(구술시험위원) 삭제 <개정 2024. 12. 30.>

제45조(구술시험평가 및 판정) 삭제 <개정 2024. 12. 30.>

제46조(논문판정) 논문심사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,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, “가” 또는 “부” 판정한다.

제47조(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)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, 표절검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결과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2. 30.>

②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7. 30.>

부칙 <제02283호, 2025. 6. 27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